

『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이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명칭(안 제2조)
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은,
 - 구미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,
 -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나,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공동세탁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업복 세탁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